

◎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-284호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1년 8월 27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

1. 개정 이유

- 오디오·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·통신·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(국제기준 부합화)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검사항목 및 안전 기준 현황 일치화
- 전기기기 일부 품목의 적용 안전기준명 오기 수정

2. 주요 내용

1) 대상: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

2) 주요 개정 내용

- 오디오·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·통신·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검사항목 일치화(별표 19, 별표 22)
- 오디오·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·통신·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(별표 25)
- 전기기기 일부 품목(일체형세탁기·건조기, 의류관리기)의 적용 안전기준명 오기 수정(별표 25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체검사의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안전기준 K 60950-1(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-723호), K 60950-22(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-723호)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인증된 전기용품은 별 표 19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